

##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n Human Rights Crisis

-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

Byung Sun Seo<sup>#</sup>, Tae Il Chung<sup>+</sup>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awareness on human rights crisis from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y recognized discrimination in equal opportunity with the average score of more than 3.0 points regardless of thei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ajor finding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graphic background,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in term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ssibility of hierarchical movement is related to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while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Finally,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appears to be related to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according to hierarchy in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awareness, viewpoint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s, demographic background, socioeconomic background, discrimination awareness

### 1. 서론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천부적 권리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관련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정치적 구속력을 받게 되었다(Kim, 2013: 50; Cho, 2001: 6). 그러나 인권은 냉전체

제에서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따라 자유권의 제한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83년 국제사면위원회(AI)의 연례보고서와 1988년 12월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Kim, 1997: 3).

북한인권에 대한 논쟁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차원에

<sup>#</sup> The 1st author: Byung Sun Seo, Tel. +82-43-261-2209, e-mail, koreasbs@naver.com

<sup>+</sup> Corresponding author: Tae Il Chung, Tel. +82-43-261-2209, e-mail, jung6495@chungbuk.ac.kr

서 강화되었다(Park, 1999: 134).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들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역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원칙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도 적용하였다.(Cho, 2012: 67; Heo 2004: 4-5). 유럽연합의 헬싱키협정은 국제협력과 지역협력을 통해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Yun, 2011: 36). 유럽연합은 2000년에 ‘대북행동지침(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Soh, 2006: 71). 이를 계기로 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증폭되어 국제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북한인권법을 만들도록 하였다(Kim, 2011: 136-137). 2003년에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제연합의 북한인권위조사위원회는 국제인권법 등에 관한 위반 여부와 인권침해를 조사해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압박하였다. 특히, 2004년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공론화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존중 및 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책 장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Lee, 2005: 64; Kim, *et. al.*, 2010: 80).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한 1998년의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국제규약의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개념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여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이었다(An, 2010: 17).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이념에 따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탈냉전시기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면서 국제인권규약을 남용한다고 반발하였다(Kim, 2000: 27-28). 북한은 서방국가들이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복과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였다(Bang, 2012: 168; Lee, 2005: 12-13). 북한은 모든 국가가 민족자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도 국가의 자주권에 앞설 수 없다고 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배제하였는데(Lee, 2011: 148), 이러한 북한의 인권인식은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 중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압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Ghoo, 2005: 250; Nam, 2005: 82; Chun, 2006: 192).

결국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개선압력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북한체제의 정치적 지배구조, 사회적 차별구조, 경제적 분배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정책적 요인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Kim, *et. al.*, 2012, 190; Lee, 2010: 80). 최근 북한은 사회전반에서 심각해지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체제의 인권실태와 인구사회적, 사회경제적 차별과 평등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인권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인구사회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을 변수로 활용하고, 북한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탈북자의 거주지역, 탈북시기, 계층(신분)을 변수로 활용하여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에 따른 차별이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인권의식에 이론적 검토

### 1.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간안

보(human security)'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 국제사회는 국가주권의 약화에 따른 비정부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연대가 확대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보호를 광범위하게 강조하는 '인간안보'가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기아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자 인간안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Lee, 2011: 27; Cho & Chang, 2014: 547).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논의가 본격화되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었다. 이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북한인권의 이론적 연구,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체제의 평등성과 차별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리세(Thomas Risse)의 '나선형 5단계론'을 활용하여 북한인권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Heo, 2011: 137-168), 보호책임이론(R2P)<sup>1)</sup>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연구(Lee, 2012: 257-281), 국제사회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한 북한의 인권인식과 내부적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한 연구(Lee & Paek, 2008: 185-205; Choi, 2009: 65; Jang, 2001: 70),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 연구(Chung, 2005: 7-41; Hong, 2011: 103-136),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본질,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여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안보질서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Chung, 2006: 347-371; Shin & Ko, 2015: 9; Cho & Choi, 2013: 29; Park, 2014: 285), 그리고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시각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념을 통해 북한인권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Lee, 1998: 221-241; Kim &

Choi, 2003: 14; Jung & Son, 2014: 262)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의식실태에 대한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심화되는 성분에 따른 차별인식을 분석하고(Lee & Chon, 2010; KINU, 2008; KINU, 2014; KINU, 2015; Kang, 2006; Kim, 2011; Jeong, 2001),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Kim, 2012).

셋째, 북한체제의 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NHRC, 2005),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NHRC, 2008),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여성인권상황실태보고서』(NHRC, 2010),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KINU, 2015)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사회의 인권상황,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은 출신과 성분으로 구분시켜 북한사회에서 성분과 계층이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Park, 2012: 169-205; Choi, 2002: 5; Park, 2005: 131; Park, 2006: 316).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탈냉전과 2000년대 보호책임에 대한 강화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이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구조에서 더욱 심화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한 북한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이 경험하는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기회균등관점에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인권인식에 대한 기회균등원칙의 적용

정의는 그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권리와 의무를 배분

1)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2005년에 국제연합이 개최한 세계정상회담에서 R2P선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선언에서 세계정상들은 개별 회원국이 국민들을 네 가지 주요 R2P범죄, 즉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회원국이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제2차적 보호책임을 가진다고 합의하였다(Park, 2014: 299).

하고, 사회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롤즈(John Rawls)는 주장하였는데, 주요제도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 등이다(Hwang, 2003: 40). 여기에서 주요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미래기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이 불평등으로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작용되지 말아야 하며, 능력이나 공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말아야 한다(Choi, 1994: 164).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공정하게 근거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배일(veil of ignorance)이라고 롤즈는 보았다. 전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출발하는 최초의 상태이며, 후자는 원초적 입장과 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정보를 차단하고자 설정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각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ark, 2002: 180).

정의론에 대한 롤즈의 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이라는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의론은 가족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종교와 성별 등이 성공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방해요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Kim, 2007: 115-117). 이는 법률로 정해진 권리와 같은 형식적 기회균등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에서 직책과 직위 등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의론의 이상적 방향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관을 제시하는 것이다(Bang, 2001: 90-93). 현존하는 사회제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상적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그 제도는 부정의한 것으로 여겨진다(Hwang, 2003:

332). 따라서 정의론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평등한 경쟁을 통해 부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인 관계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는 것이다. 결국 롤즈가 주장하는 기회균등원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사회경제학적으로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업과 직위의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Hong, 1994: 37). 만약에 특정한 권력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 직업과 직책을 독식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Kim, 2003: 226). 이에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에서 동일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동일한 노력을 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가족적 배경이나 종교 등의 사회적 배경이 성공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롤즈의 기회균등원칙이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가족의 배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계층과 성분에 의해서 기회가 결정된다고 추론된다. 북한주민들은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평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과 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기회와 분배의 불공정한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된다.

결국 북한사회는 신분과 계층에 의한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균등원칙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보아 롤즈의 기회균등원칙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북한 체제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기회균등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사회체제는 사회의 여러 직위와 직책들이 개방되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접근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회균등원칙은 사회정책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체제에서 개

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개입은 사람들의 의욕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열려있는 사회구조이다. 불평등한 문제들은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실천이다. 모두가 개방된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기회균등원칙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이득과 불이익을 제한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한 결과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적 배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직위와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한 결과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사실, 존 롤즈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천부인권사상의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자유주의를 채택하든, 사회주의를 채택하든 대부분의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기본적 권리로 하는 천부인권사상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독헌법(1974) 제20조와 러시아헌법(1993) 제19조, 중국헌법(1993) 제33조~제51조, 북한헌법(1992) 제64조~제72조에서 모든 인민은 민족, 종족, 인종, 세계관, 종교, 혈통,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모든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Park, 1995).

하지만 북한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며, 제81조 제2항에서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고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n Bar Association, 2018: 29). 이런 북한의 인식은 천부인권사상과 관련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북한식의 사회주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상이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특정 국가가 가진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에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채택한 체제적 특수성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보편성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부인권사상의 주요한 가치를 존 롤즈의 기회균등원칙과 연계시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경험한 북한의 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체제에서 기회균등에 관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회균등원칙을 북한체제에서 분석함에 있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구분해 북한의 인권의식에 관한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체제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기회균등에 있어 차별이 있느냐 하는 가설과 어떠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기회균등의 차별을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체제가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라 기회균등에 있어 차별이 있느냐 하는 가설과 어떠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기회균등의 차별을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 III.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1. 설문조사개요

본 북한인권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사회의 인권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회균등

적 관점에서 인권의식은 천부인권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세계인권선언의 주요개념을 존 롤즈의 기회균등원칙에 활용한 것이다. 1948년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모든 인류가 다함께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공통기준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법 앞에 평등, 거주지 자유, 남녀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한 교육권리 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천부인권사상과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장하는 인권의식은 존 롤즈가 말하는 기회균등적 정의론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존 롤즈가 말하는 기회균등원칙은 가족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종교와 성별 등이 성공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방해요소가 되지 말아야 하며, 직책과 직위 등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천부인권사상을 적용한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인권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북한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기회균등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분류하고, 사회경제학적 배경은 탈북시기, 거주지역, 핵심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회균등인식은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차별로 나누었다. 설문조사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북한의 전통적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남아 선호사상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의사결정 위치 정도에 따라 기회균등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은 북한체제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회제도에서 대접을 받는 기회가 젊은 사람보다는 많을 것이다. 셋째, 학력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생활 만족도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사회경제학적 배

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시기는 고난의 행군 전후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변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계층설정은 노동자, 농민, 노동당원, 혁명가족 등 북한의 핵심계층이 인식하는 기회균등의 의식은 생활만족도가 높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은 정주여건에 따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위사람들과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이 종속변수인 기회균등인식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인구사회적 배경에 의해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탈북자의 거주지역, 시기,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의표집(convenient sampling)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sup>2)</sup> 설문조사의 대상 선정에 있어 탈북자 지원기관의 전문상담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를 줄이고자 지역, 성별, 학력, 직업, 탈북년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별에 있어 남자 33.3%, 여자 66.7%로 성별 차이가 많은데, 이는 전체 탈북자의 비율 중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연령은 40대 이상이 51.7%, 20대~30대가 48.3%이며, 최종학력은 고등중학교졸업 78.3%,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21.7%이다. 탈북시기는 1999년 이전 30%, 2000년~2005년 28.3%,

2)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서병선의 2016년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06년~2010년 11.7%, 2011년~2015년 30%로 나타났으며, 탈북할 때 계층은 기본군중 70%, 핵심군중 23.3%, 감시대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은 대부분 국경에 인접한 함경도 지역 85%, 기타 지역 15%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식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의식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서 인식하는 인권의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의식을 유추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와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몇 가지 기본정보 문항에서 설문문항보다 범주가 축소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설문문항을 만들었다. 1점은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없다', 2점은 '약간 있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다소 많다', 5점은 '매우 많다'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평균값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소 많거나 매우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균값이 3점보다 낮은 것은 거의 없다거나 약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단순 평균값 비교,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기술통계는 응답 범주별로 빈도분석과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은 주로 t-검정방법을 활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이 가정된 모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기회균등의 요인인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 가능성, 계층차별을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라 검정통계량 값과 유의확률(p-value)을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확률(p-value)이  $\alpha$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고, 이는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북한의 기회균등인식은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탈북자의 성별, 연령, 학력으로 구분해 차별인식에 대한 정도를 평균값, 평균값 차이, 표준편차, 유의확률(p값)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회부여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1>에서 보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여성 평균값 2.88점을 제외한 항목에서 남녀 모두 평균값 3점 이상을 보인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교육기회, 공직진출, 직업선택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이 있음을 말하며, 평균값의 차이('남성'-'여성')가 각각 0.270, 0.200, 0.350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차별'은 성별 간에 심각하지 않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에서는 평균값이 남성 4.15점, 여성 3.9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기회부여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으로 '20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서 보면, 연령별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평균값 차이('20대~30대'-'40대 이상')가 각각 0.000, 0.030, -0.170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두 집단 모두 평균값이 2.97점으로 집단 간의 차별인식은 같은 반면에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평균값이 각각 4점 이상,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령과 무

Table 1.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granting opportunities

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3.150/1.348	2.880/1.362	0.270	0.463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150/1.137	3.950/1.154	0.200	0.527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800/1.196	3.450/1.280	0.350	0.312
Age		20s and 30s	over forty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2.970/1.349	2.970/1.378	0.000	0.995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030/1.085	4.000/1.211	0.030	0.908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480/1.214	3.650/1.305	-0.170	0.62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3.150/1.318	2.310/1.316	0.840	0.046*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110/3.550	3.690/1.251	0.420	0.251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550/1.316	3.620/1.044	-0.070	0.876

\* p<0.05, \*\* p<0.01, \*\*\* p<0.001

관하게 차별의식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기회부여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으로 ‘중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학력에 따른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중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3.15점과 2.31점으로 차별인식이 매우 심각하며, 마찬가지로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도 ‘중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11점과 3.69점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제한’에 있어서는 평균값 차이(‘중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가 -0.070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부여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별인식에서 학력에 따른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가 0.840, 유의확률 0.046으로 유의미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함을 보이지 않았다.

2)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제도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2>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에서 평균값 차이(‘남성’-‘여성’)가 각각 -0.080, -0.050, -0.0180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제도에 의한 차별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의 우선권’에서 남녀 모두 평균값이 3점 미만인 것은 연장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연장자의 결정권’의 평균값이 남녀 모두 3.5점 이상인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사회제도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으로 ‘20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사회제도에 따른 연령별 차별인식에서 평균값 차이(‘20대~30대’-‘40대 이상’)가 각각 0.040, -0.200, -0.400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의 우선권’에서 평균값이 두 집단에서 3점 미만인 것은 세대별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평균값이 남성 3.41점, 여성 3.81점인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결정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social systems

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Respect for the elder	2,100/1,119	2,180/1,130	-0,080	0,809
	Priority for the elder	2,350/1,565	2,400/1,130	-0,050	0,893
	The elder's decision	3,500/0,946	3,680/1,289	-0,180	0,593
Age		20s and 30s	over forty		
	Respect for the elder	2,170/1,167	2,130/1,088	0,040	0,882
	Priority for the elder	2,280/1,251	2,480/1,435	-0,200	0,563
	The elder's decision	3,410/1,268	3,810/1,078	-0,400	0,20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Respect for the elder	2,150/1,142	2,150/1,068	0,000	0,989
	Priority for the elder	2,400/1,424	2,310/1,032	0,090	0,116
	The elder's decision	3,620/1,208	3,620/1,121	0,000	0,997

\* p<0.05, \*\* p<0.01, \*\*\* p<0.001

셋째, 사회제도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으로 ‘중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사회제도에 따른 차별인식에서 평균값 차이(‘중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가 0.000, 0.090,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에 대한 우선권’의 평균값이 2.5점 미만인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는 3.5점 이상으로 연장자가 존중받는다고 인식하였다.

### 3)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 직업선택기회 상승’,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첫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3>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 직업선택기회 상승’,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에서 평균값이 모두 3점대 이하이고, 평균값 차이(‘남’-‘여’)가 각각 0.050, -0.550, -0.080으로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은 남

녀 모두에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계층이동가능성은 학력에 의한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성분에 의해 좌우되는 특수적 상황임을 의미한다.

둘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에서 보면,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 직업선택기회 상승’,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은 두 집단의 평균값이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에서 ‘20대~30대’의 평균값 3.280을 제외하면 3점미만으로 차별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은 평균값 차이(‘20대~30대’-‘40대 이상’)가 각각 0.510, 0.510, 0.250으로 ‘40대 이상’보다는 ‘20대~30대’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사회가 특수한 신분과 계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은 ‘중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평균값 차이(‘중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가 0.0미만으로 학력이 계층이동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물론 고학력이면 직업선택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그에 따른 차

Table 3.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3,050/1,191	3,000/1,340	0,050	0,888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300/0,979	2,850/1,122	-0,550	0,067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00/1,165	2,180/1,152	-0,080	0,814
Age		20s and 30s	over forty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3,280/1,222	2,770/1,309	0,510	0,131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930/1,100	2,420/1,057	0,510	0,07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280/1,066	2,030/1,224	0,250	0,41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2,910/1,365	3,380/0,870	-0,470	0,143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620/1,095	2,850/1,144	-0,230	0,51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10/1,165	2,310/1,109	-0,200	0,580

\* p<0.05, \*\* p<0.01, \*\*\* p<0.001

별인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에서 ‘고등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모두 2.5점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인 것은 북한사회에서 좋은 대학진학이 성공조건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한다.

4) 계층차별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계층차별에 따른 차별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개인능력이 성공좌우’, ‘범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첫째, 계층차별에 따른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4>에 보면, 성별에 따른 계층차별에 대한 평균값 차이(‘남’-‘여’)가 0.1미만으로 계층차별에 대해 남녀의 인식 차이가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인식은 남녀의 평균값이 각각 2.30점과 2.28점으로 낮은 편이지만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는 남녀의 평균값이 각각 4.20점과 4.10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남자든, 여자

든 개인의 능력보다 어느 출신계층이냐가 성공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계층차별에 따른 연령별 차별인식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 보면, ‘개인능력이 성공좌우’는 ‘40대 이상’에서 평균값이 1.90점으로 매우 낮다. 이것은 북한에서 성공은 개인능력과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평균값 2.69점인 ‘20대~30대’도 비슷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개인능력이 성공좌우’의 유의확률 0.02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에서 ‘20대~30대’와 ‘40대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10점과 4.16점으로 성공조건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좌우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범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에서 ‘20대~30대’와 ‘40대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2.93점, 3.29점으로 범위반자에 대한 차별인식은 보통수준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계층차별에 따른 학력별 차별인식은 ‘고등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개인능력이

Table 4.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hierarchical discrimination

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300/1,625	2,280/1,154	0.020	0.951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050/1,317	3,150/1,388	-0.100	0.790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200/1,152	4,100/1,105	0.100	0.746
Age		20s and 30s	over forty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690/1,514	1,900/0,978	0.786	0.022*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2,930/1,250	3,290/1,442	-0.360	0.30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100/1,012	4,160/1,214	-0.060	0.84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190/1,313	2,620/1,325	-0.430	0.308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190/1,393	2,850/1,214	0.340	0.420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320/0,958	3,460/0,858	0.860	0.054

\* p<0.05, \*\* p<0.01, \*\*\* p<0.001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은 학력에 상관없이 매우 낮으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엄격성은 학력별 평균값이 3.0점대 전후로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계층이 직업선택의 제한’에 있어서는 유의확률이 0.0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에 가깝다. 특히, ‘고등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32점, 3.46점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선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다.

### 3.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북한의 기회균등인식은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탈북자 거주지역, 탈북시기, 탈북자 계층으로 구분해 차별인식에 대한 정도를 평균값, 평균값 차이, 표준편차, 유의확률(p값)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 1)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이 거주지역과 관련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자의 거주지역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으로 구분하여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

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5>에 보면, 거주지역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은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는 평균값이 ‘국경지역’ 2.94점, ‘비국경지역’ 3.11점이고,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는 평균값이 ‘국경지역’ 3.55점, ‘비국경지역’ 3.67점으로 국경지역보다 비국경지역이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4.14점, 3.33점으로 국경지역이 비국경지역보다 매우 차별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의확률이 0.051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둘째,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5>에서 보면,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권’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에서 모두 3점미만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낮다. 그렇지만 ‘연장자의 결정권’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3.71점, 3.11점으로, 이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권’과는 다르게 ‘연장자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다.

셋째, 거주지역에 따른 고학력,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5>에서 보면, ‘고학력, 사

Table 5. Discrimination awareness by residential area

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Within the border(A)	Outside the border(B)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2,940/1,392	3,110/1,167	-0.170	0.731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4,140/1,077	3,330/1,323	0.810	0.051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3,550/1,286	3,670/1,118	-0.120	0.798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pect for the elder	2,120/1,125	2,330/1,118	-0.210	0.598
	Priority for the elder	2,330/1,337	2,670/1,414	-0.340	0.497
	The elder's decision	3,710/1,171	3,110/1,167	0.600	0.165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2,960/1,280	3,330/1,323	-0.373	0.426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550/1,083	3,330/1,000	-0.784	0.048*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80/1,178	2,000/1,000	0.176	0.674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160/1,271	3,000/1,414	-0.840	0.076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160/1,405	2,890/1,054	0.270	0.58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140/1,114	4,110/1,167	0.030	0.949

\* p<0.05, \*\* p<0.01, \*\*\* p<0.001

회적 지위의 향상'과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은 평균 값 차이('국경지역'-'비국경지역')가 각각 -0.373, 0.176 으로 비국경지역과 국경지역에서 차별인식은 약간 있으며, 비국경지역이 국경지역보다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더욱 체감하였다. 또한 '고학력, 직업선택의 기회 상승'에서는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2.55점과 3.33점이며, 평균값 차이('국경지역'-'비국경지역')가 -0.784이고, 유의확률이 0.048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비국경지역이 국경지역보다 성공조건으로 좋은 대학의 진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5>에서 보면, 국경지역이든 비국경지역이든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은 차별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평균값에서 보면, 국경지역(2.16)보다 비국경지역(3.00)이 성공하는데 개인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은 국경지역 3.16점, 비국경지역 2.89점으로 보아 국경지역이 비국경지역보다 엄격한 법적

용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 2) 탈북시기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이 탈북시기와 관련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자의 탈북시기를 '1999년 이전',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으로 구분해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탈북시기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인식이다. <Table 6>에서 보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에서 유의확률이 0.081로 유의미한 값에 근접하였다. 기회부여에 관련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2006년~2010년'에 3.29점,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은 '1999년 이전'에 3.61점,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2011년~2015'년에 3.78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탈북시기에 따라 각각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

Table 6. Discrimination awareness by the time of escape form North Korea

Categories	Variables	Time of escape form North Korea	Means	Standard deviations	P-values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99	2.83	1.465	0.730
		2000~2005	2.76	1.480	
		2006~2010	3.29	0.951	
		2011~2015	3.17	1.295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1999	3.61	1.420	0.081
		2000~2005	3.00	1.225	
		2006~2010	3.00	1.291	
		2011~2015	2.78	1.396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1999	3.61	1.378	0.160
		2000~2005	3.71	1.105	
		2006~2010	2.57	1.272	
		2011~2015	3.78	1.166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pect for the elder	~1999	2.22	1.166	0.330
		2000~2005	2.47	1.281	
		2006~2010	2.14	0.690	
		2011~2015	1.78	1.003	
	Priority for the elder	~1999	2.44	1.294	0.916
		2000~2005	2.53	1.328	
		2006~2010	2.29	1.380	
		2011~2015	2.22	1.478	
	The elder's decision	~1999	3.94	1.110	0.574
		2000~2005	3.53	1.281	
		2006~2010	3.43	0.787	
		2011~2015	3.44	1.294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1999	3.28	1.406	0.786
		2000~2005	2.88	1.166	
		2006~2010	2.86	1.574	
		2011~2015	2.94	1.211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1999	2.67	1.237	0.781
		2000~2005	2.88	0.993	
		2006~2010	2.57	0.976	
		2011~2015	2.50	1.150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1999	2.56	1.423	0.152
		2000~2005	2.06	0.899	
		2006~2010	2.43	1.134	
		2011~2015	1.72	0.958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1999	2.11	1.231	0.811
		2000~2005	2.18	1.074	
		2006~2010	2.43	1.618	
		2011~2015	2.50	1.543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1999	3.61	1.420	0.300
		2000~2005	3.00	1.225	
		2006~2010	3.00	1.291	
		2011~2015	2.78	1.396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1999	4.39	1.037	0.015*
		2000~2005	3.41	1.228	
		2006~2010	4.43	0.787	
		2011~2015	4.44	0.922	

\* p&lt;0.05, \*\* p&lt;0.01, \*\*\* p&lt;0.001

미한다. 그러나 탈북시기와 따른 기회부여의 차별인식은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을 제외하면 ‘1999년 이전’의 탈북자들이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높은 편이다.

둘째, 탈북시기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이다. <Table 6>에서 보면, 탈북시기와 상관없이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권’은 2점대로 북한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우대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는 ‘1999년 이전’,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에 평균값이 각각 3.97점, 3.53점, 3.43점, 3.44점으로 북한사회에서 연장자의 결정권이 탈북시기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탈북시기를 북한세습체제에서 연계할 때 연장자에 대한 결정권이 김일성 시대에는 높고, 김정일-김정은 시대에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탈북시기에 따른 고학력과 관련된 계층이동기회에 대한 차별이다. <Table 6>에서 보면, 북한사회에서 고학력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항에서 평균값이 2.50점에서 2.88점으로 고학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선택의 기회에 작용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좋은 대학의 진학이 성공조건’에서는 평균값이 평균 이하인 2.5점대 이하로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특히, ‘2011년~2015년’에 탈북한 주민들의 평균값이 1.72점인 것은 김정은시대에서는 좋은 대학보다 출신성분이 성공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탈북시기와 관련된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6>에서 보듯이 탈북시기에 따라 ‘개인능력이 성공좌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차별인식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는 유의확률이 0.01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탈북자의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능력이 성공좌우’에 대한 여부는 평균값이 탈북시기별

로 2.5점 이하로 낮는데, 이는 탈북시기별로 차별인식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고, 개인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경향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탈북시기별로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은 평균값이 3점대로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은 탈북시기별로 평균값이 ‘2000년~2005년’ 3.41점을 제외하고 4.39점에서 4.44점을 보여 계층에 따라 직업선택이 매우 제한된다고 인식하였다.

### 3) 탈북자의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은 계층과 관련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자의 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감시대상’으로 구분해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계층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7>에서 보면, ‘핵심군중(Core group)’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기본군중(Base group)’과 ‘감시대상(Watchdog group)’보다 평균값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핵심군중’이 다른 그룹보다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의 평균값이 각각 4.14점, 4.10점과 3.86점, 3.52점인데 반면에 ‘감시대상’의 평균값은 각각 2.75점, 3.00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시대상’이 ‘핵심군중’과 ‘기본군중’보다 기회부여에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의 유의확률이 0.069로 계층차별이 유의미한 차이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 사회계층<sup>3)</sup>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Table 7>에서 보면,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권’, ‘연장자의 결정권’은 ‘핵심군중’, ‘기본군중’, ‘감시대상’의 평균값 차이가 약간 있지만 사회제도에 대

3)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감시대상(적대계층)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각 계층의 인구분포

Table 7. Discrimination awareness by hierarchy in North Korea

Categories	Variables	Hierarchi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values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re group	3,07	1,592	0,912
		Base group	2,95	1,324	
		Watchdog group	2,75	0,957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Core group	4,14	1,167	0,069
		Base group	4,10	1,100	
		Watchdog group	2,75	0,957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Core group	3,86	0,864	0,453
		Base group	3,52	1,383	
		Watchdog group	3,00	0,816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Core group	2,00	1,240	0,848
		Base group	2,19	1,110	
		Watchdog group	2,25	0,957	
	Respect for the elder	Core group	2,36	1,393	0,226
		Base group	2,29	1,312	
		Watchdog group	3,50	1,291	
	Priority for the elder	Core group	3,36	1,447	0,403
		Base group	3,64	1,122	
		Watchdog group	4,25	0,500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Core group	3,21	1,477	0,551
		Base group	2,90	1,185	
		Watchdog group	3,50	1,732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Core group	3,00	0,961	0,436
		Base group	2,57	1,129	
		Watchdog group	2,50	1,29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Core group	2,64	1,082	0,168
		Base group	1,98	1,115	
		Watchdog group	2,25	1,500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Core group	2,79	1,626	0,100
		Base group	2,05	1,125	
		Watchdog group	3,00	1,633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Core group	3,93	1,269	0,029*
		Base group	2,83	1,305	
		Watchdog group	3,25	1,25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Core group	4,29	1,069	0,103
		Base group	4,19	1,042	
		Watchdog group	3,00	1,633	

\* p<0.05, \*\* p<0.01, \*\*\* p<0.001

한 차별인식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감시대상’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다른 그룹과 차이는 보여 ‘감시대상’이 북한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감시대상’은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평균값이 4.25점으로 사회제도에 대해 차별인식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는 핵심군중은 노동당 당원인 통치계급으로 28%, 기본군중은 당원이 아닌 노동자로 45%, 감시대상은 체제불만자로 27%이다(KINU, 2014: 230-231).

셋째,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7>에 보면, 고학력이 ‘사회적 지위의 상승 기회’와 ‘직업선택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좋은 대학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인식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 ‘기본군중’은 고학력이 주는 계층이동가능성에서 다른 그룹보다 모두 낮은 평균값을 보여 고학력이 계층이동가능성과 무관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북한사회에서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은 그 평균값이 ‘핵심군중’ 2.64점, ‘기본군중’ 1.98점, ‘감시대상’ 2.25점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아 학력보다 출신성분이 중시된다고 보았다.

넷째,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이다. <Table 7>에 보면,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와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범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성’에서는 유의확률이 0.02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북한사회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은 변수에 따라 그룹별로 평균값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에서는 ‘기본군중’이 2.05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감시대상’이 3.00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범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성’에서는 ‘기본군중’이 2.83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핵심군중’이 3.93점으로 제일 높았고,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는 ‘감시대상’이 3.00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핵심군중’이 4.29점으로 제일 높았다. 이것은 각 그룹 간에 계층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는 평균값이 ‘핵심군중’ 4.29점, ‘기본군중’ 4.19점, ‘감시대상’ 3.00점으로 계층이 높을수록 심각하게 차별을 느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에서의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의식을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인구사회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은 교육기회와 직업기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보통이지만 공직진출에서는 남녀 모두 차별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남녀 모두 학력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층에 따른 차별은 남녀 모두 개인의 능력보다 계층과 성분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 모두에서 교육기회, 공직진출, 직업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 모두가 있다고 보았다.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지만 계층에 따른 차별은 20대~30대에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40대 이상은 능력보다는 계층과 성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학력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은 교육기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직진출에서도 평균값에서 차별이 다소 많음을 보인다.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고등중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 모두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으며, 계층에 따른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거주지역, 탈북시기,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이 국경지역이나 비국경지역이나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의 차별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교육기회, 공직진출, 직업선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모두에서 차이가 없다.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국경지역에 비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가 많다고 보아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으나 계층에 따른 차별은 거주지역에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탈북시기가 1990년 이전,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2010년~2015년이나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와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탈북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탈북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계층에 따른 차별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셋째,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그리고 감시대상의 계층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은 교육기회와 공직진출,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 계층 간 차별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과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에서도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간에는 고학력에 따른 차별인식이 존재한다. 즉, 기본군중보다 핵심군중이 계층과 학력에서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위에서 검증한 연구가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라 사회참여기회의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인 불평등한 독재체제에 순응한 인권의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본 연구가설에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북한인권의식에 대한 검증은 북한체제 속에서는 유의미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대비와 통일 이후를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탈북자들이 인권의식을 탈북 전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서 인식하는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변화에 요구되는 다양한 프

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제도가 철저히 요구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북한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식을 위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와 기구를 구축해 민간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종식시키는 압박수단으로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개선은 현실적으로 난관에 빠져 있다. 이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남북대화 등 교류협력과 병행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천부적 권리를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부합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존속되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진행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통일한국의 관점에서는 통일대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축,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 References

- An, Gyoong Oh. 201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orm of 'Theory of Social Justice'*.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Bang, In Hyuk. 2012.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Contemporary Politics*. 5(2): 165-193.
- Bang, Young June. 2001. The Studies on the Social Ethics Approach of the Inequality. *Journal of Ethics*. 47(1): 83-99.

- Cho, Jae Hyun. 2012.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itizenship in the Progres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Vision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nstitution*. 11: 61-90.
- Cho, Jung Hyun and Sok Young Chang.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ts Recommendation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Hogik Law Review*. 15(3): 537-571.
- Cho, Jung Hyun. 2013.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ussions in North Korea: Focusing on COI. *JDI Policy Forum*. 126: 18-35.
- Cho, Kyung Keun. International Regime Theory: The Concept of Regim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1): 1-16.
- Choi, Eui Chul. 2002.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UN Human Right Regime: Focu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oul: KINU.
- Choi, Ki Sung. 2009. A Study on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Rawls' Law of People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1): 51-73.
- Choi, You Shin. 1994.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The Journal of Sun Moon*. 4: 133-174.
- Choo, Jae Woo. 2005. Evaluating U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 Panacea for North Korean Refugee Problem?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3): 239-262.
- Chun, Sung Lim. 2006.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Nationalism: Focusing on Cultural Nationalism in the 20th Century China.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5(1): 189-207.
- Chung, Kyung Hwan. 2005.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Substantial Countermeasur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Unification Strategy*. 5(1): 7-41.
- Chung, Kyung Hwan. 2006.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Our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3): 347-371.
-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North Korean Studies. 2005. *A Surve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ased on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NHRC.
- Heo, Man Ho. 2004. EU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doption of Resolutions by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2): 1-29.
- Heo, Man Ho. 2011. Changes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Policy vis-à-vis Chinese and Vietnamese Cases: A View from the Five-Phase "Spiral" Model.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2): 137-168.
- Hong, Min. 2011. The Everyday Life of People and Social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Studies*. 7(1): 103-136.
- Hong, Sung Woo. 1994. A Study on Rawls' Principles of Justice. *Social Thought Studies*. 4: 31-62.
- Hwang, Kyung Sik. 2003. *A Theory of Justice*. Seoul: Ehak Publishing Co.
- Jang, Mi Kyoung. The Enlargement and Change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Beyond the Concept of Liberal Citizenshi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5(6): 59-77.
- Jeong, Gi Bang. 2001. The Conflict between Equality/Efficiency in Socialist Countries based on Openness and Marxist-Leninism: Policy-making Processes and Conflicts Reflected in Policie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11(2): 109-127.
- John, Rawls,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Young Chul and Ho Cheol Son. 2014. The History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Contemporary Politics*. 7(1): 259-283.
- Kang, Myoung Ok. 2006.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mproving Strategy and Comparative Analysi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im, Kang Nyeong and Ei Cho Choi. 2003.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Our Response. *Unification Strategy*. 3(2): 9-40.
- Kim, Geun Sik. 2013.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oci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Focus on Comprehensive Approach.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18: 49-73.
- Kim, Guk Shin, et. al. 2010. *A Study on North Korea's Opening Policy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Plan*. Seoul: KINU.
- Kim, Il Gi. 2011.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on the Human Rights and North Korea's Strategy.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26(2): 129-147.
- Kim, Myung Ki. 2000.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DPRK from International Covenant. *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Law*. 45(1): 21-36.

- Kim, Pyong Ro. 1997.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KINU.
- Kim, Sang Deuk. 2007.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Just Distribution of Gene.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40: 113-136.
- Kim, Seok Hyang. 2011. The Daily Lives of the Disabl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tories from the DPRK Defectors' Recollection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5(1): 85-110.
- Kim, Soo Am, et. al. 2012.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Corruption in North Korea*. Seoul: KINU.
- Kim, Sun Hye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Focused on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The Journal of Bucheon University*. 24: 225-235.
- Kim, Yun Tae. 2012.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Life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since the Food Crisis of the 1990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INU. 200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INU.
- KINU. 201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INU.
- KINU. 201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INU.
- Korean Bar Association. 2018. *201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orean Bar Association.
- Lee, Moo Chul. 2011.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Viewpoint on Human Right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4(1): 147-187.
- Lee, Dong Yoon and Jong Eun Paek. 2008.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on the Human Rights: The Limits of Internal Change against External Pressur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18(1): 185-205.
- Lee, Keum Soon and Hyun Joon Chon. 2010. *A Survey on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s*. Seoul: KINU.
- Lee, Sang Sin. 2010.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GOs of South: Changing Course in Effort to 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 Problems. *Unification and Law*. 4: 76-97.
- Lee, Seok Yong. 2005.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eoul: Sechang Publishing Co.
- Lee, Shin Wha. State Failure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Practical Implication for Nor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1): 257-281.
- Lee, Won Woong. 1998.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Some Agenda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1): 221-241.
- Lee, Won Woong. 2005. The U.S. Human Rights Policy on North Korea: Goals, Means and Its Impact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9(2): 49-71.
- Lee, Woo Young. 2011.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since 2000: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North Korea Economy Review*. 13(11): 21-34.
- Nam, Jung Hyu. 2005. The Construction of Modern Nation-State in China and Chinese Nationalism.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10(4): 79-102.
- NHRC. 2005. *A Report Inquir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NHRC.
- NHRC. 2008. *A Report Inquir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NHRC.
- NHRC. 2010. *A Report Inquiry for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Seoul: NHRC.
- Park, Chae Yong. 1995. *Research on Socialism*. Seoul: World Baby Mission Publishing House.
- Park, Hahn Kyu. 2014. Sovereign Specificity and Global Universality: A Debate o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4(1): 291-310.
- Park, Heung Soon. 1999. UN Human Rights Regime and International Society: Changes and Trends in the Post-Cold War Era. *Social Science Research*. 2: 122-154.
- Park, Jin. 2002. A Theory of Justice and Civi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J. Rawls' Theory of Just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7: 175-190.
- Park, Sun Song. 2014.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 Critical Review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8(2): 281-309.

Park, Young Ja. 2012. Cleavage by Class, by Generation and by Region in the Changing time of North Korean Regime: Situation and Structure basing on Model of the Actor.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5): 169-205.

Park, Young Kil. 2005. Article 26 Protection of Equal Rights.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Review*. 2(2): 129-168.

Park, Young Kil. 2006. Article 16 Right to be Recognized as a Human by Law.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Review*. 3(2): 315-322.

Seo, Byung Sun. 2016. *A Study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with a Viewpoint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s*. Ph. D.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Shin, Chang Hoon and Myung Hyun Ko. 2015. *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ubsequent Human Rights*. Seoul: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oh, Chang Rok. 2006.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nd East Asian Human Rights Governance: Based on International Regime Theorie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7(2): 55-87.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09. *A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eoul: NHRC.

Yun, Woo. 2011. *A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idance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in North Korea*. Ph. 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명옥. 2006.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개선전략과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10. 탈북여성인권상황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강녕 · 최이조. 2003.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3(2): 9-40.

김국신 외. 2010. 북한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서울: 통일

연구원.

김근식. 2013.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향: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8: 49-73.

김명기. 2000. 북한의 인권규약 탈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5(1): 21-36.

김병로. 1997.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김상득. 2007. 기회균등의 원칙과 정의로운 유전자 분배. 대동철학. 40: 113-136.

김석향. 2011. 북한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1): 85-110.

김선현. 2003. 분배적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부천대학논문집. 24: 225-235.

김수암 외. 201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김윤태. 2012.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한이주민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일기. 2011.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동북아연구. 26(2): 129-147.

남정휴. 2005. 중국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동북아논총. 10(4): 79-102.

대한변호사협회. 201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 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서병선. 2016. 북한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존 롤즈의 기회균등원칙 관점에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 2002. 사회정의론과 시민사회: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 175-190

박순성. 2014.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8(2): 281-309.

박영길. 2005. 제26조 평등권의 보호. 공익과 인권. 2(2): 129-168.

박영길. 2006.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공익과 인권. 3(2): 315-322.

박영자. 2012. 체제변동기의 북한의 계층 · 세대 · 지역 분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46(5): 169-205.

박한규. 2014.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주권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 논쟁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4(1): 291-310.

- 박재용. 1995. 사회주의연구자료집. 서울: 세계아기선교출판국.
- 박홍순. 1999. 유엔인권레짐과 국제사회: 탈냉전시대의 변화와 추세. 사회과학논집. 2: 122-154.
- 방영준. 2001.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국민윤리연구. 47(1): 83-99.
- 방인혁. 2012.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연구. 현대정치연구. 5(2): 165-193.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북한주민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서창록. 2005. 북한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거버넌스: 국제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7(2): 55-87.
- 신창훈, 고명현. 2015.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안균오. 2010. 사회정의론의 정책구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우. 2011.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순, 전현준. 2010.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동윤, 백종은. 2008.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외부압력에 대한 내부변화의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8(1): 185-205.
- 이무철. 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14(1): 144-187.
- 이상신. 2010. 북한인권과 NG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변화 과정. 통일과 법률. 4: 76-97.
- 이석용. 2005.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발전. 국제인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 이신화. 2012.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1): 257-281.
- 이우영. 2011.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북한경제리뷰. 13(11): 21-34.
- 이원웅. 1998.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32(1): 221-241.
- 이원웅. 2005.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목표, 수단, 영향. 북한연구학회보. 9(2): 49-71.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 정경환. 2005.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제적 대응. 통일전략. 5(1): 7-41.
- 정경환. 2006.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3(3): 347-371.
- 정기방. 2001. 개방화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따른 사회주의국가 내에서의 평등/효율간 갈등: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에 투영된 갈등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1(2): 109-127.
- 정영철, 손호철. 2014.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인권문제. 현대정치연구. 7(1): 259-283.
- 조경근. 2001. 국제레짐이론: 개념논쟁. 국제정치연구. 4(1): 1-16.
- 조재현. 2012. 유럽연합 시민권 개념의 발전과 전망: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1: 61-90.
- 조정현, 장석영. 2014.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홍익법학. 15(3): 537-571.
- 조정현. 2013.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126: 18-35.
- 주재우. 2005.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단: 탈북자문제의 만병통치약?. 대한정치학회보. 12(3): 239-262.
- 천성림. 2006. 20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문화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 5(1): 189-207.
- 최기성. 2009. 롤즈 '만민법'의 사상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7(1): 51-73.
- 최유신. 1994. John Rawls의 정의론 연구. 선문논총. 4: 133-174.
- 최의철. 2002.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레짐: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허만호. 2004. 유럽연합의 대 북한 인권정책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 채택. 대한정치학회보. 12(2): 1-29.
- 허만호. 2011.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14(2): 137-168.
- 홍민. 2011.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의 사회적 구성. 북한학연구. 7(1): 103-136.
- 홍성우. 1994.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고찰. 사회사상연구. 4: 31-62.
- 황경식. 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층에 따라 ‘법외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주제어 : 북한인권인식, 기회균등관점, 인구사회적 배경, 사회경제학적 배경, 차별인식

---

Profiles **Byung Sun Seo** :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Politic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koreasbs@naver.com).

**Tae Il Chung** :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 major fields are political Thoughts and Korean Politics. His recent papers are “The Critical Study on the Election Revolu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2016)” and “The Effects of Political Regionalism in Korea(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15)”(jung6495@chungbuk.ac.kr).